##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7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 임이자 · 김성원 · 유용원

김위상 • 조지연 • 김형동

우재준 • 최수진 • 이상휘

박성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 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 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 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 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면제) ① 제110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를 적으려는 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과 대체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제5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 량과 대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 일
	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면
	제) ① 제110조제1항 및 제112
	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
	<u>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으로 제</u>
	조·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화학물질의 명
	<u>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u>
	<u>을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를 적으려는 자
	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
	<u>칭 및 함유량과 대체자료 등을</u>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u>야 한다.</u>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1</u> 0의2. 제112조의3제2항을 위
	반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
	<u>칭 및 함유량과 대체자료 등</u>
	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u>짓으로 제출한 자</u>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